

1. 개정이유

이·미용영업자가 사망시 이·미용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속인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291호, 2023년 3월 28일 공포, 2023년 9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미용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속인이 폐업신고하려는 경우 절차 및 제출서류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미용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속인의 폐업신고 절차를 신설 및 제출서류를 규정함(안 제3조의3, [별지 제5호의2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본문”을 “본문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제3조의4 중 “법 제3조제3항”을 “법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의5제3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제20조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영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영업소 주소			
폐업일				
사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영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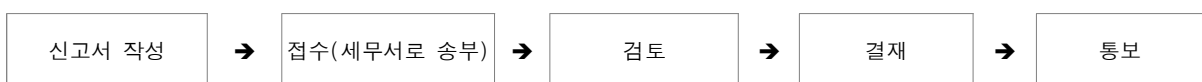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①법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①----- 본문 및 제3항----- ----- ----- ----- -----.
<u><신 설></u>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	④ -----

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은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제3조의5(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
 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
 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서에 「부
 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
 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
 야 한다.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중위
 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
 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
 다. 이하 같다)는 2년마다 실시
 하되, 공중위생영업소의 보건·
 위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중
 위생영업의 종류 또는 제21조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평가주
 기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공
 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휴업신
 고를 한 경우 해당 공중위생영

법」 제8조제8항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부가가치세

법」 제8조제8항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위생교육) ① ~ ④ (생략) 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⑥ ~ ⑪ (생략)	----- -----. 제23조(위생교육)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부 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 ----- ----- -----. ⑥ ~ ⑪ (현행과 같음)
---	---